



4월 17일부터

불법 주·정차

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

정부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·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곳을 절대 주·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합니다.
(도로교통법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 88조)



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·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
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